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7. 20 선고 2020가단137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7. 20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6. 8. 체결된 증여계약을 13,3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3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허윤범

별지